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196

발의연월일: 2024. 9. 23.

발 의 자:김영호·박홍배·이병진

이기헌 • 박희승 • 김준혁

한민수 · 문정복 · 문대림

김영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 등 신체를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로 합성 · 편집하여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수가 공유하는 '지인 능욕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행위는 중 · 고 · 대학교, 군인, 간호사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 범위가 막대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

그런데 텔레그램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상태임. 범죄 규모에 비해 가해자 처벌이 더디다 보니 오히려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과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 수칙을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구성됨.

이에 딥페이크나 몰카 등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을 생성·유포하는 목적의 메신저 채널 또는 단체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

의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의 유포·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이하 "반포등"이라 한다)"를 "(인터넷 주소의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반포등"이라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②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	
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u>(이</u>	<u>(인터넷</u>
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	주소의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	방법을 제시한 경우를 포함한
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	<u>다. 이하 "반포등"이라 한다)</u>
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	
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	
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	
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	
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